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7
----------	-----

2016. 10. 14.(금)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박한범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16년 09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09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0월 05일

-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한범 의원)

가. 제안사유

○ 의회 운영에 있어 그 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 변경(안 제8조제3항)

○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
(안 제22조의2제3항)

○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6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의 선거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 및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가. 수정사유

○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상황 변경에 따른 예산안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나. 주요내용

○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의 내용 변경 (안 제68조의2)

- 예결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삭감 예산 증액시 협의해야 한다.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477
----------	-----

발의연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박한범, 임병운, 박종규
이양섭, 박병진, 이종욱
박봉순

1. 개정이유

- 의회 운영에 있어 그 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안 제8조제3항)
-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에서 “5일” 로 변경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함 (안 제22조의2제3항)
-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68조의2)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22조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6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예결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삭감예산 증액시 협의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생략)</p> <p>제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u>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u></p> <p>제22조의2(입법예고) ①-② (생략) ③ <u>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68조의2(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삽입)</p>	<p>(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최다선</u> <u>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u></p> <p>제22조의2(입법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u></p> <p>제68조의2(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① <u>소관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세출예산은 삭감함을 원칙으로 한다.</u> 1. <u>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u> 2. <u>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u> 3. <u>의회의 사전동의가 없는</u></p>	<p>(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최다선</u> <u>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u></p> <p>제22조의2(입법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u></p> <p>제68조의2(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u>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삭감예산 증액시 협의해야 한다.</u></p>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의 체결에 따른 세출예산

4. 본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
산에서 삭감되고 상황변경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
관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
원회 전체위원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 계 법 령

□ **국회법**[시행 2015.3.19.] [법률 제12502호, 2014.3.18., 일부개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 행정절차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지방재정법**[시행 2016.6.30.]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